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33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윤후덕 · 김태년 · 김성범
김문수 · 김정호 · 박민규
백혜련 · 박지원 · 백승아
이광재 · 정태호 · 김성희
황명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수협의 고유목적 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

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를 “제19호”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전산용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용역으로서 2026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을 “전산용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3. 제19호-----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u>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⑩ ----- <u>전산용역에 대해서는</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⑧ -----

해당하는 <u>전산용역으로서 2026</u> <u>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것에</u> <u>대해서는</u>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다. 1. ~ 3. (생략) ⑨ (생략)	-----<u>전산용역에 대해서는</u> ----- ----- --. 1. ~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	---